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8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한 정원 1명의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17일까지에서 2024년 6월 1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6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2. ~ 5.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2 다음에 “행정주사, 별정직 6급 상당 또는 운전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을 삭제한다.

별표 2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2 다음에 “행정주사, 별정직 6급 상당 또는 운전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을 삭제한다.

총리령 제154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2년”을 각각 “2024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총리령 제154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54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행 정주사보 1명은 <u>2022년</u> 6월 17 일까지 존속하며, <u>2022년</u> 6월 18 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2의 행정서기 1명으 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u>2024년</u> ----- ----- <u>2024년</u>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2	12	
<u>행정주사, 별정직 6급 상당</u>			
<u>또는 운전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u>			
<u>상당</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2	12	
<u>행정주사, 별정직 6급 상당</u>			
<u>또는 운전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u>			
<u>상당</u>	<u>1</u>	<u><삭 제></u>	-1
·	·	·	
·	·	·	